

「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3월 27일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「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현재 택지개발지구는 준공 후 5년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제한되거나 국방 및 군사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택지개발지구 준공 이후에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예외규정에 군부대 주거·복지·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추가하여 제도운영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사업 준공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의 예외규정 신설(안 제36조제2항)
- 택지개발지구 준공 후 5년간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예외규정에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른 주거·복지·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경우를 추가함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. 4. 17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의견과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·전화번호

다. 보내실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정부세종청사 6동, 우편번호 30103)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
(전화 044-201-3438, 3450, 팩스 : 044-201-5661)

4. 기타

-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정책자료→ 법령정보 → 입법·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